

	창업동아리운영규정	규정번호	6-0-08
		제정일자	2013. 3. 1
		개정일자	2026.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고 기업을 만들어 운영 할 수 있는 창업정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업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 및 제한) ① 창업동아리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접수한다. (개정 2016.3.1., 2017.4.1., 2019.9.1., 2023.9.1., 2026.7.1.)

② 창업교육센터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창업동아리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고 총장의 재가를 얻어 창업동아리를 승인한다. (개정 2016.3.1., 2017.4.1., 2019.9.1. 2023.9.1., 2026.7.1.)

③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활동개요 및 연간 사업계획서 내용이 제1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창업동아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창업동아리의 육성 목적에서 벗어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창업동아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⑤ 창업동아리 승인은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창업 및 직업능력 개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공간이나 기자재지원 등을 전제로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 2017.4.1.)

⑥ 창업동아리 활동기간은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사업자등록, 특허등록, 디자인 등록 등)이 없을 시 운영평가 후 승인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그 외에 활동이 있을 시 계속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017.4.1.)

제3조(승인취소) 창업교육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조 제2항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창업동아리의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023.9.1., 2026.7.1.)

1. 대학의 설립이념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2.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크게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창업동아리 등록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창업동아리로 등록 후 활동이 없는 경우
5. 창업동아리 운영 규정을 위반(중대 사항) 한 경우
6.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3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유고 시

제4조(구성) ① 창업동아리는 대학 소속 조교수 이상의 지도교수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6.3.1.)

②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는 하나 이상의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7.4.1.)

③ 창업동아리 지도교수가 3개월 이상 대학 외부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 교수(해당 교수 승낙서 첨부)를 추천해야 한다.

④ 창업동아리 회원 구성은 대학 재학생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졸업식 이후 창업동아리 재등록 신청 시까지의 기간은 예외 일 수 있다.

- ⑤ 창업동아리 회원은 하나 이상의 다른 창업동아리 회원으로 이중 등록 할 수 없다.
- ⑥ 지도교수가 책임 서약을 하는 경우 대학 재학생 이외의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⑦ 창업동아리 회장은 지도교수 또는 회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창업교육센터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 2019.9.1., 2023.9.1., 2026.7.1.)

제5조(활동 및 제한) ① 창업동아리는 등록 시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활동해야 한다.

② 창업동아리는 각종 창업관련 세미나, 로드쇼, 경진대회, 전시회, 설명회 참여 등 대외 활동과 아이템 개발, 제품개발 및 기술세미나,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전시회 등 대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③ 창업동아리는 대학 내, 외 의 관련 동아리, 기업, 단체 등 과 교류 할 수 있으며, 대외 교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창업교육센터에 대외교류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승인 받아 자매결연이 맺어진 동아리, 단체, 기업 등과의 교류 및 연합 활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1., 2019.9.1., 2023.9.1., 2026.7.1.)

④ 창업동아리는 대학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관련 사업과 취업 및 창업관련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개정 2017.4.1.)

⑤ 창업동아리는 창업 목적에 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학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1.)

제6조(평가 및 지원) ① 창업동아리의 창업동아리 평가위원은 창업동아리 지도교수, 창업교육운영위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창업교육센터장이 위촉하여 한시적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 발표심사 등의 방법으로 창업동아리를 평가한다.

(개정 2016.3.1., 2017.4.1., 2023.9.1., 2026.7.1.)

② 창업교육센터는 매년 1회 사업진행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창업동아리 지원 및 혜택 사업에 반영한다. (개정 2016.3.1., 2020.4.2.)

③ 모든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행정지원만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전용공간 (동아리 방 등), 기자재, 창업동아리 운영비, 대외활동비 등 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된 자료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을 지원하는 경우 전용공간지원 기간은 동아리 존속기간으로 하며 전용공간 지원을 희망하는 동아리에 한해 지원한다. (개정 2016.3.1., 2017.4.1.)

⑤ 창업동아리 기자재를 지원하는 경우 기자재 지원기간은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으로 하며 매학기 실시하는 입학취업처 기자재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회원 개인 장비와 창업동아리 자체에서 확보한 장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9.1., 2026.7.1.)

⑥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와 창업동아리 지원 기자재의 관리를 소홀히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전용 공간 및 기자재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⑦ 창업동아리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한다. (개정 2020.4.2.)

⑧ 창업동아리의 사업화를 원하는 경우 사업화 아이템의 평가 및 선정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0.4.2.)

⑨ 창업교육센터는 졸업자, 창업동아리 출신 예비 창업자를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공동 지원한다. (개정 2020.4.2., 2023.9.1., 2026.7.1.)

제7조(세칙) 삭제 <2016.3.1.>

제8조(발의) 삭제 <2016.3.1.>

제9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1.)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민대학교 창업동아리 등록신청서

동아리명					설립일자	년 월 일	
회 원 수	총 ()명				동아리방 희망여부	☐ 희망 ☐ 비희망	
홈페이지 기타 커뮤니티	http://						
회원현황	1학년 ()명		2학년 ()명		3학년 ()명		4학년 ()명
	건축 계열	IT 계열	관광·경영 계열	행정 계열	경영 계열	디자인 계열	예체능 계열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사 진 (3cmx4cm)	대 표		생년월일	년	월	일
	소 속	학과 학년	학 번			
	휴 대 폰		자택전화			
	이 메 일					
	주 소					

지도교수		소 속	(학)과
이 메 일		연 락 처	

20 년 일

창업동아리 대표 : (인)

지 도 교 수 : (인)

경민대학교 입학취업처장 귀하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창업동아리 등록취소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 동아리 회원명단

번호	성명	학과	학년	학번	성별	휴대폰	이메일
1							
2							
3							
4							
5							
6							
7							
8							
9							
10							

※ 창업동아리 이종 등록 불가 - 이종으로 등록이 밝혀질 경우 회원명단에서 삭제 처리
동아리 대표도 휴대폰 및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입

3. 동아리 및 아이템 소개

1. 창업동아리 소개

2. 창업동아리 설립동기

3. 아이템

가. 아이템 명:

나. 선정 이유:

다. 특징 소개:

동아리명			
소 속		성 명	
직 위		회 원 수	

본인은 20 학년도 창업동아리 설립목적 및
활동내용을 인정하고, 동아리 회의 및 각종 행사에 관하여 지도할
것을 서약하며 설립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지 도 교 수 :

(인)

3. 동아리 지원금 사용계획

동아리명:		회 장 명:		지원금액: 원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 액	
합 계					

세부항목의 예	1. 시제품개발비, 마케팅비, 멘토링비, 입주지원비, 외주용역비, 교육비, 견학비, 실습비, 특허출원비, 회의비 등 2. 회의비는 지원금의 50%이내여야 하며, 반드시 활동일지에 회의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민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창업동아리(대표 및 회원) 등록 및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생년월일,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되며, 이후에는 즉시 파기됩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지원자(대표 및 회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절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창업동아리(대표 및 회원) 등록 및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 같이 수집 및 이용토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창업동아리 등록 및 지원사업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ㄴ ㅁ ㅇ

[illegible]